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7. 6.

특 허 청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상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특허취소신청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등록제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이전등록 신청시 등록증 재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등기법,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4조·13조·53조)

1) 등기명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부동산등기법의 ‘예고등기제도’가 폐지(‘11년)됨에 따라, 1심 법원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관련 조항을 삭제함.

2) 특허취소신청 관련 등록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표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비스업을 삭제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나. 권리이전등록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항목을 추가하고, 제3자의 직권 말소 요청을 위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신청인 편의를 도모하는 등 별지서식 정비(안 제13조 및 별지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의 확정결정 제4조제2항제2호 중 “ 「특허법」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확정결정”으로 한다.

제13조제11항 중 “(서비스업, 업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⑬ 특허권 등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등록원부상 권리말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제30호서식의 직권말소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4호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제27호서식 및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위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6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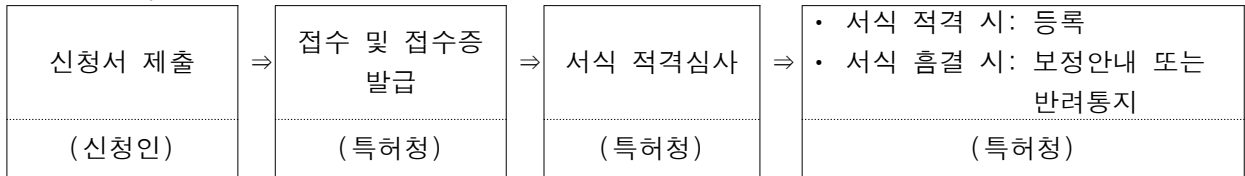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명의인 표시를 특허고객번호 정보에 따라 변경(경정)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다만, 이 서식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며, 이후의 신청 시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을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인]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나.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신청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2.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는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신청인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신청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권(등록권), 실시권, 사용권 등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권리의 표시]

[해당란]전용실시권자란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예][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10-1234567-00-00

[권리의 표시]

[해당란]특허권자란

[신청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20-1234567-00-00

[권리의 표시]

[해당란]전용실시권자란

6. [첨부서류]란

가.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1]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예 2] 명칭 또는 주소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신고서

[접수번호]2-1-2009-1234567-12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신청인(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권리이전 등록 신청서

※ □ 예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대상권리]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신청구분] □전부이전 □일부이전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분할이전 □분할

[등록권리자(양수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받을 지분]) (기재요령 제3호 라. 참조)

[등록의무자(양도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할 지분]) (기재요령 제4호 마. 참조)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상품류(디자인대상 물품)])
[지정상품, 업무(디자인 일련번호)]

[등록원인]
([특약])

([가등록 신청])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령방법】**)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방문수령(대전송달함) □방문수령(서울송달함) □우편수령
(**【수령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위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납부금액](기재요령 제12호 참조)
[등록료]
([등록세])
([인지세])

(**【특허(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합계]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 14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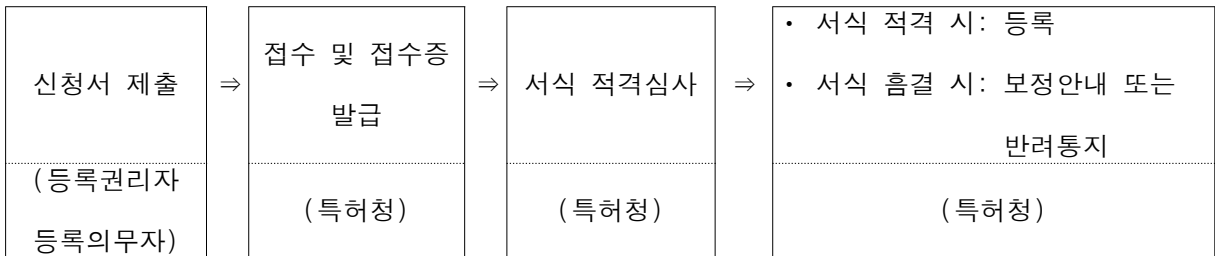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권리 또는 권리의 지분 이전,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의 분할이전, 상표권의 분할의 경우에 제출합니다.

신청 구분	내 용
전부이전	특허(등록)권의 전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일부이전	특허(등록)권 중 일부를 이전하여 공유로 하려는 경우
지분전부이전	다수의 특허(등록)권자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분일부이전	다수의 특허(등록)권자 중 일부 특허(등록)권자가 가진 지분의 일부를 이전하려는 경우
분할이전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하려는 경우 * 분할이전은 지정상품 등의 분할과 동시에 권리의전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등록신청도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분할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상표권을 둘 이상의 상표권으로 분할하려는 경우 * 분할은 분할이전과 달리 지정상품 등의 분할의 효과만 발생되며 권리의전의 효과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분할을 통해 하나의 권리가 두 개의 권리로 나누어지지만, 권리자는 동일합니다. 때문에 분할의 경우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대상권리]란

신청대상이 되는 권리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2. [신청구분]란

신청하려는 이전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3.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042-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라. [이전받을 지분]란

- (1) 이전되는 권리가 지분일 경우 등록권리자가 이전받을 지분을 적습니다.
- (2) 지분은 “○/□(분자/분모)” 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 (3) [이전받을 지분]란은 [이전할 지분]란과 같아야 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복수인 경우나 등록의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전받을 지분]란의 합과 [이전할 지분]란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 (4) 등록원부에 복수의 권리자가 공유자로 적혀 있으나 지분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신청서에 지분을 적어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별지 제21호서식(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을 통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4. [등록의무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전부이전신청일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필요 없이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은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상표분할의 경우에는 이 난을 적지 않습니다.

라.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042-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마. [이전할 지분]란

- (1) 이전되는 권리가 지분일 경우 등록의무자가 이전할 지분을 적습니다.
- (2) 지분은 “○/□(분자/분모)” 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 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 (3) [이전할 지분]란은 [이전받을 지분]란과 같아야 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또는 등록의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전받을 지분]란의 합과 [이전할 지분]란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 (4) 등록원부에 복수의 권리자가 공유자로 적혀 있으나 지분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신청서에 지분을 적어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별지 제21호서식(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을 통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 (5) 등록의무자의 지분이 서로 다른 순위번호로 중첩 등록되어 생성된 경우에는 [이전할 지분]란이 등록의무자의 전체 지분 중 어느 순위번호로 생성된 지분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분 앞에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예 1] 단일한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이전

[이전할 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8)]

[예 2]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이전

[이전할 지분]1/4[순위번호 3번(지분 1/8), 순위번호 7번(지분 1/8)]

[예 3]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일부 이전

[이전할 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16), 순위번호 7번(지분 1/16)]

5.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7.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

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 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 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8.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국제등록번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등록의 대상이 실시권, 사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 업무]란은 상표권분할 또는 상표권분할이전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상품류에 대하여 분할 또는 분할이전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상품류 단위로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예] [등록대상의 표시]

[등록번호]40-0012345-00-00

[상품류] 제 20 류

[지정상품] 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책상

[상품류] 제 21 류

[지정상품]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라.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대상권리, 신청구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지분을 적은 경우에는 그 지분, 특약, 등록원인 및 가등록 신청 여부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9. [등록원인]란

“양도”, “지분양도”, “지분포기”, “일부양도”, “일부양도(공유)”, “지분일부양도(공유)”, “판결”, “결정”, “법률규정”, “조정”, “정당권리자로의 이전” 등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정당권리자로의 이전”은 「특허법」 제99조의2제1항(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 제28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0. [특약]란

「특허법」 제99조제3항(「특허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권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디자인보호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권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록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특약]란을 만들어 그 약정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11. [가등록 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가등록처분명령의 정본, 그 밖에 정지조건부 양도예약증서, 시기부 양도예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12.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란

가. 이전등록신청과 함께 특허(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증 재발급신

청”으로 적습니다. 특허(등록)증은 1장 교부되며, 이전등록이 완료된 후 재발급하여 발송합니다.
 나. 【등록대상의 표시】에 두건이상을 병합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허(등록)증 재발급】란은 기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제29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시면 특허(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수령방법】은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라. 【수령인】란은 특허(등록)증 재발급을 기재한 경우에 필요에 따라 이 난을 적습니다. 수령할 주소를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령인】)란의 다음 행에 다음 예와 같이 【성명(명칭)】, 【우편번호】, 【주소】란 등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예] 【수령인】

【성명(명칭)】

【우편번호】

【주소】

13. [납부금액]란

가. 등록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항목 및 금액을 적습니다.

나. [등록료]란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절차 구분	관련 규정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에 관한 절차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다. 특허(등록)권의 이전 또는 지분이전을 하거나 상표권분할, 상표권분할이전 또는 디자인분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란의 다음 줄에 [등록세]란을 만들고,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세액(교육세 포함)을 적습니다.

라. 특허(등록)권의 이전 또는 지분이전을 하거나 상표권분할이전 또는 디자인권분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란의 다음 줄에 [인지세]란을 만들고,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인지세액을 적습니다.

마. 이전신청과 동시에 특허(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란의 다음 줄에 【특허(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란을 만들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를 참조하여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양도증,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선택, 제적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통
-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 (3) 업무표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 (4) 「상표법」 제34조제1항제3호 단서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서면 1통
- (5)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6)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양도증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예]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서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10-111111(특허 제111111호)
(지분) 지분 1/2 *양도대상이 권리의 일부(지분)일 경우 지분을 적습니다.
발명의 명칭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순위번호 3번 전용실시권) *실시권, 질권 등의 권리를 양도할 때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매도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매수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계약내용] 권리자인 매도인은 상기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양도대상에 따라'전부, 일부, 지분전부, 지분일부'양도 중 선택
하여 적습니다. 계약내용은 신청서의 [신청구분]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금] 1억원(W100,000,000)
* 매매대금의 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지므로 인지세 요율을 확인한 후 적으시기 바랍니다.

[특약]
1.
2.

[계약일] 2011 년 7 월 13 일

매도인 (인감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매수인 (서명 또는 날인(일반도장 가능))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6.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에 의한 신청일 경우에는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 등록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등록료, 등록세 및 인지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http://www.giro.or.kr>) 지로 납부서비스 또는 신용카드납부를 이용합니다.

다.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료, 등록세 및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실시권(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구분] □전용실시권(사용권) □통상실시권(사용권)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등록원인]

([특약])

([가등록신청])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기간]

[지역]

[내용]

([실시대상상표])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

([기타])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료] 원 (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2호 참조)

([서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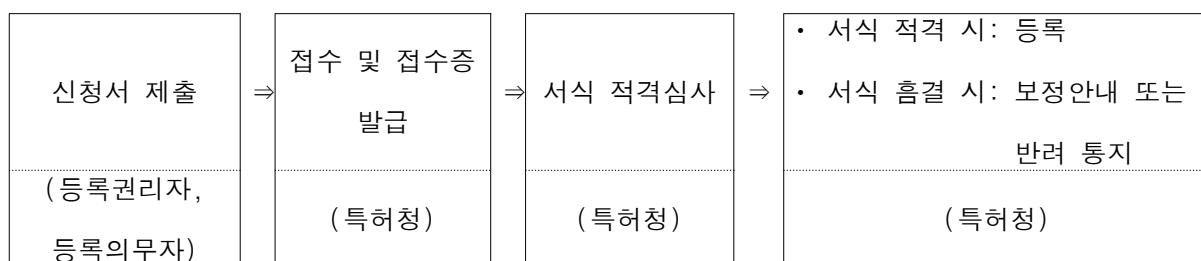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상표권에 대하여 사용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구분	내 용
전용실시권	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통상실시권	타인에게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전용사용권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통상사용권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경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신청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

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3. [등록의무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특허고객번호 대신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 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국제등록번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신청구분, 등록권리자 및 등록

의무자, 지분을 적은 경우에는 그 지분, 특약, 등록원인, 가등록 신청 여부 및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6. [등록원인]란

“설정계약”, “계약체결”, “허락”, “수용”, “재정”, “실시권자허락”, “통상실시권 허여” 등 해당사항을 적으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7. [특약]란

「특허법」 제99조제3항(「특허법」 제100조제5항 및 제10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권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디자인보호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권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원인]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특약]란을 만들어 그 약정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란에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8. [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으로 적습니다

9.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

가. [기간]란은 다음 예와 같이 적어야 합니다.

[예] [기간] 2010. 1. 1.부터 2020. 6. 30.까지

나. [지역]란은 실시할 지역의 시·도 명칭을 다음 예 1과 같이 적으며, 실시할 지역을 상세히 적는 경우는 다음 예 2와 같이 시·도 명칭 다음에 한 칸의 공백을 두고 지역명을 적습니다. 다만, 실시할 지역이 대한민국 전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예 3과 같이 “대한민국 전국일원”이라 적습니다.

[예 1]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예 2] [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충청북도 제천시

[예 3] [지역]대한민국 전국일원

*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다. [내용]란에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의 청약”, “대여의 청약”, “방법을 사용” 등 해당사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상표권을 대상으로 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예] [내용]생산, 사용, 양도, 대여

라. [실시대상상표]란은 등록상표 일부를 대상으로 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적으며, 그 기재요령은 다

음 예와 같습니다.

[예 1] [실시대상상표]

[상품류]제20류

[지정상품]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상품류]제21류

[지정상품]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마.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란은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 [대가의 금액]금 6,000,000 원

[대가의 지급시기]매 분기말

[대가의 지급방법]등록권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

바. ([기타])란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재사항 외에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예] 계약 후 1년 이내에 기술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본 설정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행위는 해지됨.

사.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실시권의 범위 및 내용]란이 동일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등록료]란

등록 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권리구분	관련 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2항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2항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제2항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제2항

11.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2.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허락서 등)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호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실시권(사용)계약서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전용(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허락서)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40-111111(상표 제111111호)

권리의 표시 (순위번호 3번 전용사용권) * 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 설정의 경우 대상 전용사용권을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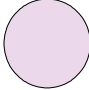
[당사자의 표시]

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실시권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계약내용] 다음과 같이 전용(통상) 사용권 설정을 허락(계약)한다.

사용기간 2011년 8월 1일 ~ 2016년 8월 1일

지역	대한민국 전지역		
상품류 및 지정상품	제20류: 의장, 의자 제24류: 직물제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은제외)		
대가의금액	무상		
[특약]	1. 2.		
[계약일]	2011 년 7 월 13 일		
	권리자		(인감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사용권자		(서명 또는 날인(일반도장 가능))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용(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허락서)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10-111111(특허 제111111호)

발명의 명칭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순위번호 3번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경우 대상 전용 실시권을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권 리 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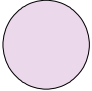
실시권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계약내용] 다음과 같이 전용(통상) 실시권 설정을 허락(계약)한다.

실시기간 2011년 8월 1일 ~ 2016년 8월 1일
지역 대한민국 전지역
실시내용 생산, 사용
대가의금액 무상

([특약]) 1.
 2.

[계약일] 2011 년 7 월 13 일

권리자  (인감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실시권자 (서명 또는 날인(일반도장 가능))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질권 설정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질권의 대상]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의 종류] □질권 □근질권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설정받을 지분]) (기재요령 제3호 다. 참조)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설정할 지분]) (기재요령 제4호 다. 참조)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등록원인]

([가등록신청])

[질권설정의 내용]

[채권(최고)액]

([존속기간])

[변제기]

[이자의 약정]

[위약금의 약정]

[특 약]

([채무자의 표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료](기재요령 제11호 참조)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서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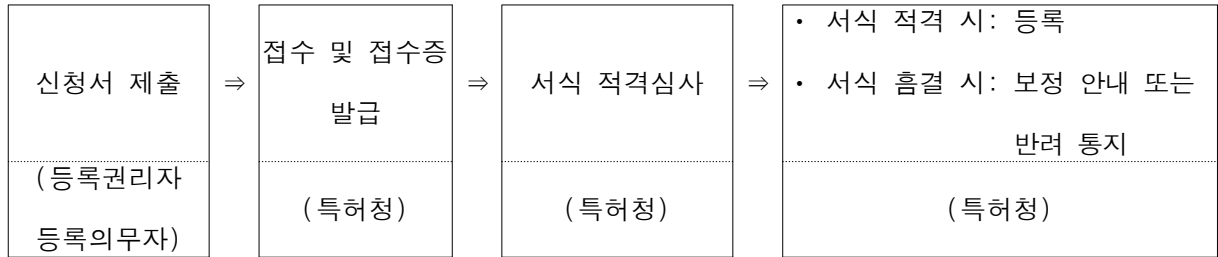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뒤쪽)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질권의 설정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질권의 대상]란

질권의 목적이 되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2. [질권의 종류]란

질권의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3.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설정받을 지분]란

(1) 질권이 권리의 지분에 설정될 경우 등록권리자가 설정 받을 지분을 적습니다.

(2) 지분은 “○/□(분자/분모)” 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3) [설정받을 지분]란은 [설정할 지분]란과 같아야 합니다. 등록권리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전체가 설정 받는 지분이라는 의미에서 [설정받을 지분]란을 한번만 적습니다. 질권자 상호 간 질권에 대한 귀속지분은 별도로 별지 제21호서식(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을 통해 신청하여 적습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홍길동

[특허고객번호]00-0000-0000000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고길동

[특허고객번호]00-0000-0000000

[설정받을 지분]1/3 ← 등록권리자가 두 명 이상이라도 설정받을 지분은 등록권리자 전체가 받을 지분을 한번만 적습니다.

- 종략-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홍두깨

[특허고객번호]00-0000-0000000

[설정할 지분]1/3

(4) 등록원부에 복수의 권리자가 공유자로 적혀 있으나 지분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신청서에 지분을 적어 질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별지 제21호서식(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을 통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라.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042-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4. [등록의무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특허고객번호 대신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설정할 지분]란

- (1) 질권이 권리의 지분에 설정될 경우 등록의무자가 설정할 지분을 적습니다.
- (2) 지분은 “○/□(분자/분모)” 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 (3) [설정할 지분]란은 [설정받을 지분]란과 같아야 합니다. 등록의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마다 [설정할 지분]란을 적고 각 [설정할 지분]란의 합이 [설정받을 지분]란과 같아야 합니다.
- (4) 등록원부에 복수의 권리자가 공유자로 적혀 있으나 지분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신청서에 지분을 적어 질권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별지 제21호서식(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을 통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 (5) 등록의무자의 지분이 서로 다른 순위번호로 중첩 등록되어 생성된 경우에는 [설정할 지분]란이 등록의무자의 전체 지분 중 어느 순위번호로 생성된 지분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분 앞에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예 1] 단일한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설정

[설정할 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8)]

[예 2]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설정

[설정할 지분]1/4[순위번호 3번(지분 1/8), 순위번호 7번(지분 1/8)]

[예 3]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일부 설정

[설정할 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16), 순위번호 7번(지분 1/16)]

라.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5.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6.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국제등록번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질권의 대상이 실시권 또는 사용권인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제00번

[등록사항]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질권의 대상, 질권의 종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지분을 적은 경우에는 그 지분, 등록원인, 가등록 신청 여부 및 질권 설정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7. [등록원인]란

“설정계약” 등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8. [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 으로 적습니다.

9. [질권설정의 내용]란

[질권의 종류]란에 질권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란을 [채권액]란으로 하고 다음 예와 같이 적으며, ([변제기], [이자의 약정], [위약금의 약정], [특약])란은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질권의 종류]란에 근질권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채권(최고)액]란을 [채권최고액]란으로 하고 계약서의 채권최고액을 적고 ([존속기간], [변제기], [이자의 약정], [위약금의 약정], [특약])란은 계약서에 특히 정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 [채권액]금 1,234,567,890원

[존속기간]

[변제기]2012. 12. 31.

[이자의 약정]월 2%

[위약금의 약정]변제기를 도과한 경우 잔여채권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를 지급한다.

[특약]특허 123456호를 공동담보로 함.

채무불이행시 질권설정자는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상기의 질권설정 대상인 특허권을 양도한다.

10. [채무자의 표시]란

가. 등록의무자(질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시 적은 성명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을 [명칭]란으로 바꾸어 적습니다.

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채무자의 [성명], ([우편번호]) 및 [주소]란을 적으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을 각각 [명칭],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적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우편번호])란을 삭제합니다).

11. [등록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 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권리구분	관련 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12.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3.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질권설정계약서)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 (3)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질권설정계약서나 근질권설정계약서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질권 설정계약서(허락서)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10-111111(특허 제111111호)

발명의 명칭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순위번호 3번 전용실시권) *질권의 대상이 실시권일 경우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질권설정자 (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채 무 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질 권 자 (채권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계약내용] 권리자는 상기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질권 설정을 허락한다.

채권최고액 일억원 (₩100,000,000)

존속기간 2013년 1월 1일

특약 등 *이율, 변제기, 특약 등 필요 시 기재

[계약일] 2011년 7월 13일

근질권설정자(권리자)

대리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인감날인)

(서명 또는 인)

근질권자 (서명 또는 날인(일반도장 가능))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질권 설정계약서(허락서)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10-111111(특허 제111111호)
발명의 명칭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순위번호 3번 전용실시권) *질권의 대상이 실시권일 경우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질권설정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권리자)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채 무 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질 권 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채권자)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계약내용] 권리자는 상기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의 담보를 위한 질권 설정을 허락한다.

채권액 일억원 (₩100,000,000)
변제기 2013년 7월 13일
이자 년 10%
특약

[계약일] 2011년 7월 13일

질권설정자(권리자) 대리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인감날인) (서명 또는 인))
질권자 대리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일반도장 가능)) (서명 또는 인))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소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구분] 권리 전부말소 권리 일부말소 등록권리 말소 지분 말소 특약 말소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질권 말소 질권자 말소 근질권 말소 근질권자 말소
 신탁권 말소 신탁권자 말소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말소할 지분]) (기재요령 제3호 바. 참조)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일부말소대상])

([말소대상특약]) (기재요령 제7호라목 참조)

[등록원인]

([가등록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대위신청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등록료](기재요령 제10호 참조)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
재요령 제12호 참조)

([서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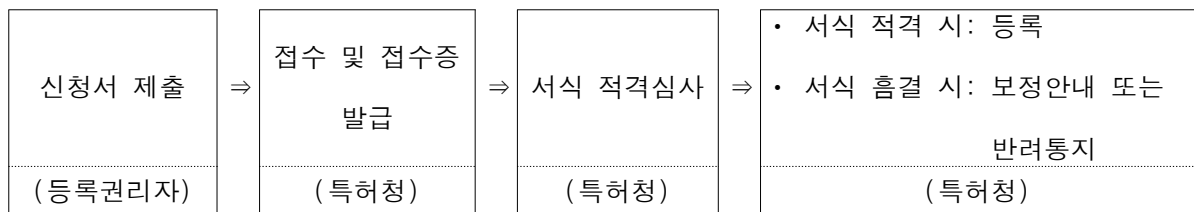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또는 그 밖의 특허(등록)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사항	신청내용
권리 전부말소	설정등록되어 있는 권리 전체를 말소하려는 경우
권리 일부말소	둘 이상의 청구항(물품, 지정상품) 중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등록권리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 특허(등록)권자 전부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권리 전부말소' 를 선택합니다.
지분 말소	특허(등록)권자란의 특정 특허(등록)권자의 지분의 전부 및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
특약 말소	특허(등록)권자란 또는 실시(사용)권자란의 특약을 전부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전용실시(사용)권자 말소	전용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통상실시(사용)권자 말소	통상실시(사용)권자란의 특정 실시(사용)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 말소	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 말소	근질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근질권자 말소	권리자란의 특정 근질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신탁권 말소	신탁권의 순위번호를 말소하려는 경우
신탁권자 말소	신탁권자를 말소하려는 경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말소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 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3. [등록의무자]란

가. “계약해제” 로 인한 말소등록의 경우에는 기재요령 제12호가목(3) 및 (4)의 서류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권리전부말소등록신청일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을 필요 없이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란을 각각 만들어 적습니다. 그 외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특허고객번호 대신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다.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라.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마. 등록의무자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인 경우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란은 국제등록부에 적힌 문자와 동일한 문자로 적으며, 그 이외의 다른 난은 한글로 적습니다.

바. [말소할 지분]란

- (1) 말소될 등록의무자의 지분을 적습니다.
- (2) 지분은 “○/□(분자/분모)” 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 (3) 지분의 일부를 말소하기 위하여 본 신청서에 말소할 지분을 적어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별지 제21호서식(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을 통해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 (4) 등록의무자의 지분이 서로 다른 순위번호로 중첩 등록되어 생성된 경우에는 [말소할 지분]란이 등록의무자의 전체 지분 중 어느 순위번호로 생성된 지분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분 앞에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예 1] 단일한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설정

[설정할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8)]

[예 2]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전부 말소

[말소할 지분]1/4[순위번호 3번(지분 1/8), 순위번호 7번(지분 1/8)]

[예 3] 복수의 순위번호의 지분 일부 말소

[말소할 지분]1/8[순위번호 3번(지분 1/16), 순위번호 7번(지분 1/16)]

4.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6.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7.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국제등록번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이전등록, 실시권, 질권 또는 이들의 가등록 등 특허(등록)권 이외의 경우에만 적으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일부말소대상])란에는 권리의 일부말소등록(지정상품·업무 일부말소등록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으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1] [일부말소대상]

[말소할 항수] 3 항

[말소할 항] 3, 4, 5

[예 2] [일부말소대상]

[상품류] 제20류

[지정상품] 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상품류] 제21류

[지정상품]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라. [말소대상특약]란

등록된 특약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말소하려는 특약란을 적습니다. 등록된 특약의 일부를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변경등록 신청서)을 통해 특약 변경의 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예][말소대상특약]

[해당란] 등록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특약

마.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신청구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지분을 적은 경우에는 그 지분, 등록원인 및 가등록 신청 여부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8. [등록원인]란

“포기”, “지분포기”, “계약해제”, “존속기간만료”, “채무변제”, “사망”, “말소(해제)”, “합병”, “영업의 폐지”, “본등록에 의한 말소”, “판결” 등 해당하는 사항을 적으며, 병합신청의 경우에는 등록원인이 동일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 으로 적습니다.

10. [등록료]란

이 난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 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권리구분	관련 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11.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2.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포기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중 선택, 제권판결등본, 채권증서 및 채무변제서,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계약해제증서, 재판의 등본 등)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 (3)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증명서) 1통
- (4)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1통
- (5)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권리포기서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권리 포기서

[권리자]

성명 :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 10-111111(특허 제111111호)

발명의 명칭 :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 (순위번호 3번 전용실시권) *포기 권리가 실시권이나 질권인 경우
그 권리의 종류와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지 분 : 1/3 * 지분의 포기일 경우 포기할 지분을 적습니다.

[내용]

본인은 위에 적힌 권리(지분)를 포기하고, 말소등록 신청 등을 통해 등록원부에 적힌 권리를 말소

할 것임을 확인한다.

[작성일] 2011 년 7 월 13 일

권리자



(인감날인)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작성 시 유의사항

포기의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회복등록 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등록원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위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료](기재요령 제7호 참조)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9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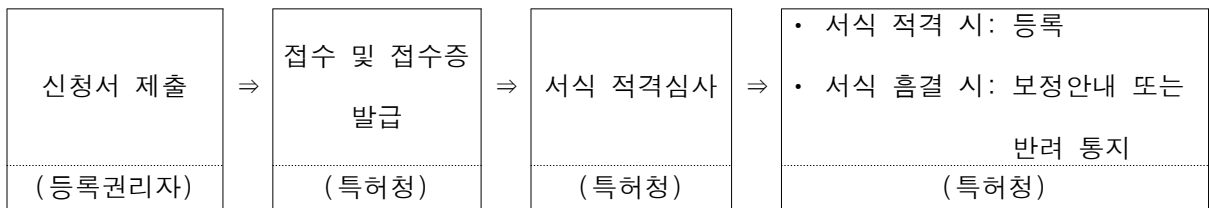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말소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등록료 불납으로 말소된 권리의 회복신청은 이 서식으로 제출할 수 없으며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5호서식인 ‘납부서’ 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2.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국제등록번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회복등록의 대상이 실시권, 사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

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통상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 0, 0번

[등록사항]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등록권리자 및 등록원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6. [등록원인]란

“회복”, “착오”, “판결” 등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7. [등록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 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권리구분	관련 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8.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9.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에 의한 신청일 경우에는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 구분] □전용실시권(사용권) 변경 □통상실시권(사용권)변경 □신탁변경
 □질권 변경 □근질권 변경 □특약변경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등록원인]

([가등록신청])

[변경사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료](기재요령 제9호 참조)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1호 참조)

([서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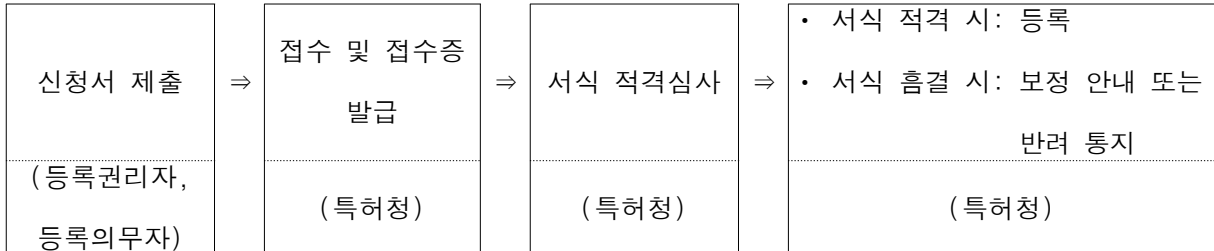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실시(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질권(근질권)의 설정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사항	신청의 내용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변경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질권 또는 근질권 변경	질권 또는 근질권의 설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탁 변경	신탁대상 권리가 일부이전 되는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특약 변경	특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구분]란

신청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3. [등록의무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특허고객번호 대신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

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국제등록번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변경하는 실시권 등 특허권(등록)권 이외의 경우에만 적으며,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특약변경을 선택한 경우에는 [권리의 표시]란 중 [해당란]란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특약이 적힌 란을 적고, [순위번호]란에는 [해당란]란의 순위번호를 적으며 [등록사항]란에는 ‘특약’ 이라고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권리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특약

라.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신청구분,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등록원인, 가등록 신청 여부 및 변경사항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외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6. [등록원인]란

가.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인 경우

(1) “실시기간변경”, “실시지역변경”, “실시내용변경”,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변경”, “실시대상디자인변경”, “대가의 금액변경”, “대가의 지급시기변경”, “대가의 지급방법변경”, “기타사항변경”, “계약변경(변경계약)” 등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1)항의 기재사항 중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변경”은 전용사용권의 변경등록신청 및 통상사용권의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나. 질권의 변경인 경우

“채권액변경”, “존속기간변경”, “변제기간변경”, “특약사항변경”, “계약변경(변경계약)” 등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7. [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 으로 적습니다.

8. [변경사항]란

등록원인에 따라 다음 예와 같이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1) 실시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인 경우

[예 1] 등록원인이 “실시기간변경” 인 경우

[변경사항]

[기간] 2011. 7. 1. 부터 2021. 6. 30. 까지

[예 2] 등록원인이 “실시지역변경” 인 경우 실시할 지역의 시·도 명칭을 다음 예 2의1과 같이 적으며, 실시할 지역을 상세히 적는 경우는 시·도 명칭 다음에 한 칸의 공백을 두고 지역명을 다음 예 2의2와 같이 적습니다. 다만, 실시할 지역이 대한민국 전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예 2의3과 같이 “대한민국 전국일원” 이라 적습니다.

[예 2의1]

[변경사항]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예 2의2]

[변경사항]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 충청북도 제천시

[예 2의3]

[변경사항] [지역] 대한민국 전국일원

*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 서울, 충청북도 → 충북)

[예 3] 등록원인이 “실시내용변경” 인 경우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의 청약”, “대여의 청약”, “방법을 사용” 등 해당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변경사항]

[내용]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예 4] 등록원인이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변경” 인 경우

[변경사항]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20류

[지정상품]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책상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21류

[지정상품] 가구닦는 솔, 가구용 먼지떨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예 5] 등록원인이 “실시대상디자인변경” 인 경우

[변경사항]

[실시대상디자인]

[예 6] 등록원인이 “대가의 금액변경” 인 경우

[변경사항]

[대가의 금액] 매출액의 5%

[예 7] 등록원인이 “대가의 지급시기변경” 인 경우

[변경사항]

[대가의 지급시기] 매월 말일까지

[예 8] 등록원인이 “대가의 지급방법변경” 인 경우

[변경사항]

[대가의 지급방법]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함

[예 9] 등록원인이 “기타사항변경” 인 경우

[변경사항]

[기타사항]전용(통상)실시(사용)권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언제든지 본 실시
(사용)권을 해지할 수 있다.

[예 10] 등록원인이 “계약변경(변경계약)” 인 경우

[변경사항]

[기간] 2011. 7. 1. 부터 2021. 6. 30. 까지

[내용]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상품류 및 지정상품]

[상품류] 제 20 류

[지정상품] 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책상

[대가의 금액] 매출액의 5%

[대가의 지급방법]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함

[기타]전용사용권자가 그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언제든지 이 사용권을 해지할 수 있다.

(2) 질권의 변경인 경우

[예 1] 등록원인이 “채권액변경” 인 경우

[변경사항]

[채권액]금 123,456,789 원

[예 2] 등록원인이 “존속기간변경” 인 경우

[변경사항]

[존속기간]2002. 12. 31.까지

[예 3] 등록원인이 “변제기간변경” 인 경우

[변경사항]

[변제기간]2002. 12. 31.까지

[예 4] 등록원인이 “특약사항변경” 인 경우

[변경사항]

[특약사항]채권액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질권설정자가 부담하며 채무금 변제 시에
즉시 질권설정을 해제한다.

[예 5] 등록원인이 “계약변경(변경계약)” 인 경우

[변경사항]

[채권액]금 123,456,789 원

[존속기간]2012. 12. 31.까지

[변제기간]2012. 12. 31.까지

[특약사항]상기 변제기간까지 채권액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 채권자에게 이 특
허권을 무상양도(강제조항)하기로 함.

(3) 특약의 변경인 경우

[예]

[변경사항]공유물분할 금지 기간은 5년으로 한다.

9. [등록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 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권리구분	관련 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10.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1.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변경계약서) 1통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 (2)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

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권리변경계약서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권리변경 계약서(질권 변경)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 10-111111(특허 제111111호)

발명의 명칭 :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 (전용실시권란의 순위번호 2번 질권) *변경 대상 권리가 실시권이나 사용권에 설정된 질권인 경우 권리란과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특허권 등 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실시권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변경 내용] 다음과 같이 전용(통상) 실시권(사용권)을 변경한다.

*실시기간이나 지역 등 변경할 내용을 선택해서 적습니다.

실시기간	2011년 8월 1일 ~ 2016년 8월 1일
지역	대한민국 전지역
실시내용	생산, 사용
대가의금액	무상

[계약일] 2011년 7월 13일

특허권 등 권리자	(인감날인은 계약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실시권(사용권)자	(인감날인은 계약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권리변경 계약서(근질권 변경)

[권리의 표시]

등록번호 : 10-111111(특허 제111111호)
 발명의 명칭 : 거북선 제조방법
 권리의 표시 : (전용실시권에 적합한 순위번호 4번 근질권)

* 변경 대상 권리가 실시권이나 사용권에 설정된 근질권인 경우 권리란과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당사자의 표시]

권 리 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근질권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회사본점 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변경 내용] 다음과 같이 (근)질권 내용을 변경한다.
 * 이율이나 변제기 등 변경할 내용을 선택해서 적습니다.

채권최고액 이억원 (₩200,000,000)
 존속기간 2015.1.1

[계약일] 2011 년 7 월 13 일

특허권 등 권리자 (인감날인은 계약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근질권자 (인감날인은 계약변경으로 손해를 보는
 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고,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대상권리]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분]

([대위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등록권리자

(대위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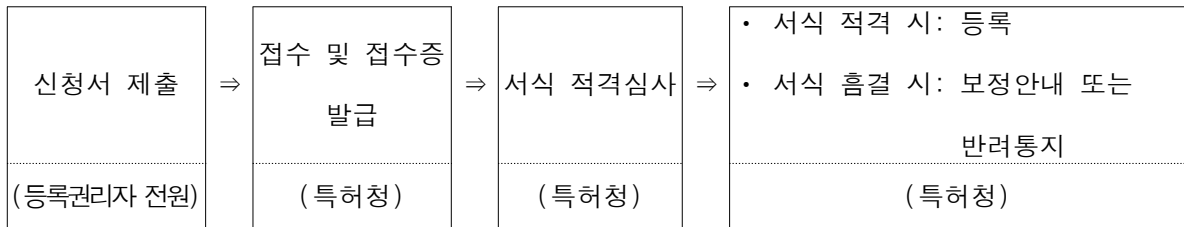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8호 참조)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2인 이상의 공동 권리자로 등록 되어 있으나, 지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공동 권리자들의 지분을 확인등록신청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대상 권리	신청의 내용
특허(등록)권, 전용실시(사용)권, 통상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	특허(등록)권, 실시(사용)권, 질권, 근질권의 공유자 간 지분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대상권리]란

신청대상이 되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한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주소]란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주소를 적습니다. 함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으로 적힌 주소가 확인되면 [특허고객번호]상의 주소가 신청서에 적힌 주소로 변경됩니다.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시]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생년월일] 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라. [지분]란

- (1) 지분은 “○/□(분자/분모)” 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 (2) 각 [등록권리자]란에 적힌 지분의 합은 반드시 1이어야 합니다.
- (3) [첨부서류]란에는 공유자 간 지분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3.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명칭)과 생년월일 및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5.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6.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국제등록번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등록의 대상이 실시권, 사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대상권리, 등록권리자, 등록원인 및 각 권리의 지분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7. [등록원인]란

“지분확인등록” 이라고 적습니다.

8.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공유지분확인서, 판결 정본 등) 1통
-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공유지분확인등록 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공유지분확인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예]

[서류명]공유지분확인서
[권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삼분의 일(1/3)
[권리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분]삼분의 이(2/3)
[사건의 표시]
[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권리의 표시]) (실시권, 질권 등 특허(등록)권 외의 경우에만 기재)
[취지]위 사건에 관한 특허(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상표, 업무표장, 단체 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지분을 위와 같이 확인한다.
[작성일자]

마.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

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동 권리자 전원이 신청하고 인감 날인해야 합니다.

나. 지분 위에 이해관계인(질권자, 실시권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압류권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전원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탁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탁의 형태] 특허권등의 전부이전 특허권등의 일부이전 특허권등의 지분전부이전 특허권등의 지분일부이전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전용실시(사용)권 이전 통상실시(사용)권 이전
질권 설정 질권 이전 근질권 설정 근질권 이전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받을 지분])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전할 지분])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등록원인]

([가등록신청])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

([질권설정의 내용])

[신탁사항]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신탁내용]

[신탁의 목적]

[신탁종료의 사유]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의 성명 및 주소])

([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 방법])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

([신탁유형]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신탁

재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공익신탁

유한책임신탁

([그 밖의 신탁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대위신청인)

(대리인)
(대리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등록료](기재요령 제13호 참조)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5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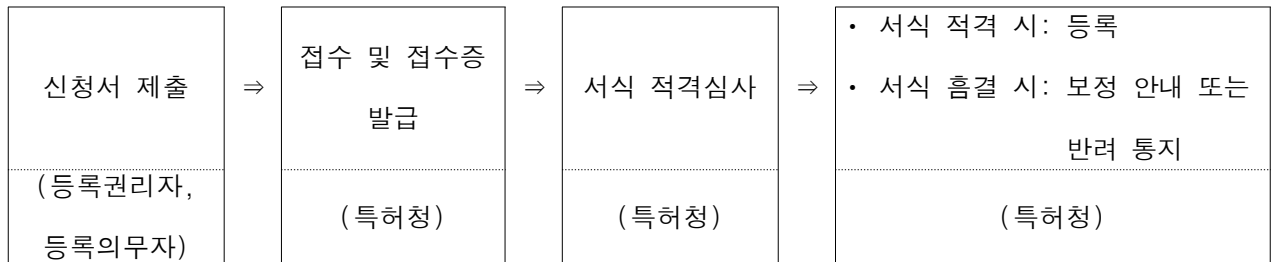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또는 그 밖에 특허(등록)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을 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탁의 형태]란

신탁의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3. [등록의무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의무자인 경우에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특허고객번호 대신 [주소]란을 만들어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4.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 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X년 X월 X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X년 X월 X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6.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7.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번호(등록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설정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다만,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디자인	[등록번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국제등록번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국제상표	[국제등록번호]	0123456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용,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용,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 신탁등록의 대상이 실시권, 사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건 상호 간에 신탁의 형태,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등록원인, 가등록 신청 여부 및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8. [등록원인]란

“신탁설정등록”, “법정계약” 등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9. [가등록신청]란

가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등록신청” 으로 적습니다.

10. [실시권(사용권)의 범위 및 내용]란

[신탁의 형태]를 ‘전용실시(사용)권 설정’ 이나 ‘통상실시(사용)권 설정’ 으로 선택한 경우 그 설정의 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기간]

[지역]

[내용]

([대상디자인(상표)])

([대가의 금액]

[대가의 지급시기]

[대가의 지급방법])

([기타])

11. [질권설정의 내용]

[신탁의 형태]를 ‘질권 설정’ 이나 ‘근질권 설정’ 으로 선택한 경우 그 설정의 내용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채권(최고)액]

([존속기간]

- [변제기]
- [이자의 약정]
- [위약금의 약정]
- [특 약])
- ([채무자의 표시]
-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 [특허고객번호])

12. [신탁사항]란

- (1) [위탁자]란에는 신탁계약서상의 위탁자를 적되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의무자가 위탁자가 됩니다.
- (2) [수탁자]란에는 신탁계약서상의 위탁자를 적되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등록권리자가 위탁자가 됩니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겸할 수 없습니다.
- (3) [수익자]란에는 신탁계약서상의 수익자를 적되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도록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공익신탁이나 수익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탁자는 수익자가 될 수 없습니다.
- (4) [신탁관리인]란에는 신탁행위로 정해진 신탁관리인이나 「신탁법」 제18조에 따라 선임된 신탁관리인을 적습니다.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신탁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등록료]란

다음의 표를 참조하여 등록 시에 납부하는 등록료의 금액을 적습니다.

권리구분	관련 규정
특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실용신안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디자인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4조
상표등록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14.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예: 신탁계약서)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문 및 확정(송달)증명원을 첨부합니다.

(2)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6.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하며,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번호]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KR(NICE)

[상품류]

[지정상품(업무)]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등록권리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료](기재요령 제7호 참조)

[분할납부 여부]

전액납부

분할납부

[갱신등록료]

개류

원

([지정상품가산금]

개상품

원)

[등록세]

[합계]

[수수료 자동납부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첨부서류 및 견본]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
요령 제10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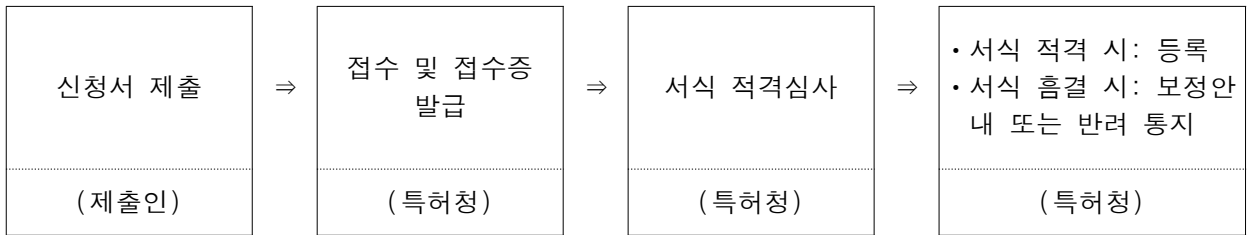
([서류명])

([출원번호(심판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등록권리자]란

가. 등록원부에 권리자로 적힌 전원이 신청해야 합니다.

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라. 2인 이상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대표자 선임신고를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신청인]란의[특허고객번호]란의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신청인대표자” 와 같이 적으며,[첨부서류]란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마.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2.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4.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만큼[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대리인]란의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고 적고 이를 이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5. [등록번호]란

등록된 권리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권리 구분	번호 기재의 예
상표	40-1234567-00-00
업무표장	42-1234567-00-00
단체 표장	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4-1234567-00-00

※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6. [갱신등록 제외 대상]란

가. 등록원부상의 모든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에 대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갱신등록 제외 대상]란 중[상품류]란에는 “없음” 이라고 적고, [분류구분] 및 [지정상품(업무)]란은 삭제합니다.

나. [분류구분]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원하지 않는 상품이 등록원부상 구 한국분류인 경우[분류구분]란에 “KR” 이라고 적으며, 국제분류인 경우 [분류구분]란에 “NICE” 라고 적습니다.

다. [상품류],[지정상품(업무)]란은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원하지 않는 상품의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을 적습니다. 둘 이상의 류에 대한 등록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예] 등록원부상의 지정상품(구 한국분류 제45류 한복바지, 한복저고리, 국제분류 제1류 구리비료, 부식토비료, 국제분류 제2류 미가공 천연수지, 코펠, 금속보호제, 국제분류 제3류 머릿기름, 선오일, 불연지) 중 국제분류 제1류 구리비료 및 국제분류 제3류 선오일에 대해서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려는 경우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KR

[상품류] 제45류

[지정상품(업무)]한복바지, 한복저고리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1류

[지정상품(업무)]부식토 비료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2류

[지정상품(업무)]미가공 천연수지, 코펠, 금속보호제

[갱신등록 제외 대상]

[분류구분] NICE

[상품류] 제3류

[지정상품(업무)] 머릿기름, 불연지

라.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원하지 않는 상품이 있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12호서식의 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등록료]란

가.[분할납부 여부]란

(1)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표법」 제72조에 따른 전액납부인지, 분할납부인지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 (2) 존속기간갱신신청하려는 자가 분할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을 존속기간갱신 신청서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 (3) 존속기간갱신신청하려는 자가 분할납부하는 경우 1회차분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은 존속기간갱신 등록신청서를 통해 납부하고, 2회차분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은 별지 제25호서식(납부서)에 의해 내야 합니다.

나. [갱신등록료]란

- (1)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전액납부 또는 분할납부에 해당하는 등록료를 적습니다.
- (2)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적습니다.
- (3) 존속기간갱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단, (2)의 경우는 제외됩니다)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및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4) 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납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한다.

다. [지정상품가산금]란에는 갱신하고자 하는 각류의 지정상품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상품개수와 가산금액을 적습니다.

라. [등록세]란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의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세액(교육세 포함)을 적습니다.

마. [합계]란에는[등록료]란 및 [등록세]란에 적힌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부여일의 다음 날까지 납부합니다.

8.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

사전에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절차의 수수료를 자동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해당 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에 표시해야 합니다.

9.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란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수수료 또는 등록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금액을 이 서식에 따라 발생하는 특허(등록)료 및 등록세로 이체하려는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서식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접수번호를 적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수만큼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2-1-2006-0518678-52

10.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3자의 허가, 인가, 동의, 승낙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수수료 자동납부번호]란의 다음 줄에 [기타]란을 만들어 그 취지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명을 적고 이 서류를 첨부합니다.
- (2) 냄새상표의 경우 30ml 이상의 액상형태의 밀폐용기 3통 또는 향이 포함된 물질을 3ml이상 도포한 향 패치 30매를 냄새상표의 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3)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나.[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으시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첨부서류]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존번호: 000-000000]

다.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진행하는 둘 이상의 절차에서 제출할 증명서(「상표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상표법」 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한다)가 같은 것일 경우에는 그 중 1건에만 증명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상표등록출원서

[출원번호] 40-2007-1234567

- (2)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증명서(「상표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상표법」 제46조제4항 또는 제47조제2항,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된 증명서만 해당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고 그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명기한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심판청구서

[심판번호] 2001-당-123456

라.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마.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인(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법인등록)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납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납부구분] 설정 등록료 연차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2회차 납부 등록료 보전
 지정상품·업무 추가 등록료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지분])(기재요령 제2호 참조)

[납부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대리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납부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등록번호)]
[청구항(디자인, 상품류)수]
([디자인의 일련번호])
([포기대상])
([납부연차(납부회차)])
([감면사유])

([특약])

[특허(등록)료]

[특허(등록)료]
([등록세])
[합계]

[수수료자동납부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회복신청]

[회복신청 원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 회복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우편수령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특허(등록)증 수령인])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납부자 (서명 또는 인)
(대위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출원, 등록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3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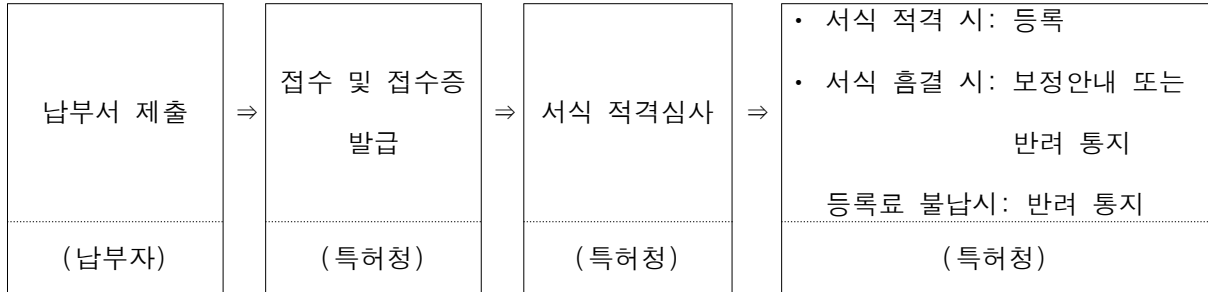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출원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다음 예와 같이 특허료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납부 사항	납부의 내용
설정특허료(등록료)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연차특허료(등록료)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존속기간갱신등록료 2회차 납부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2회차 납부를 하려는 경우 *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1회차 납부는 별지 제23호서식인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통해 납부합니다.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	지정상품 등의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경우
특허료(등록료)보전	특허(등록)료,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또는 상표등록료(존속기간갱신등록료) 분할납부 시 2회차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전명령을 받고서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납부구분]란

가. 납부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합니다.

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1회차 등록료납부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를 작성하여 납부하며, 본 서식은 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2회차 등록료만을 납부할 경우에 제출합니다.

2. [등록권리자]란

가. 설정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의 회복신청을 하면서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라.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마. [지분]란

(1) 권리자간에 지분의 약정이 있고 이를 등록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 (2) 지분은 “○/□(분자/분모)” 과 같이 분수로 적되, 반드시 전체지분에 대한 비율여야 합니다.
- (3) 각 [등록권리자]란에 적힌 지분의 합은 반드시 1이어야 합니다.
- (4) [첨부서류]란에는 공유자 간 지분약정을 증명하는 서면(공유지분확인서 또는 판결 정보 등)을 첨부합니다.

다만, 출원중에 지분을 정하고 설정등록때까지 그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령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권리에 대한 지분의 약정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공유자간 지분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납부자]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란을 적으며, [특허고객번호]란은 특허고객번호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나. 납부자가 대리인인 경우

[성명], [대리인번호]란에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명칭을 적고, [대리인번호]란에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4.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6. [납부대상의 표시]란

가. [출원번호]란에는 납부대상이 되는 사건의 출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연차특허(등록)료를 납부하거나 이를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번호(등록번호)]란에 해당하는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습니다(설정등록 시 일련번호가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출원번호에 대하여 하나의 일련번호만 적으셔야 합니다).

번호란	해당번호	기재의 예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40-2005-1234567
[특허번호(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참조1] 출원별[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허출원 : 10-2007-1234567

실용신안등록출원: 20-2007-1234567

디자인등록출원 : 30-2007-1234567

상표등록출원 : 40-2007-1234567

업무표장등록출원: 42-2007-1234567

단체 표장등록출원: 43-2007-1234567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등록출원: 44-2007-1234567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50-2007-1234567

업무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52-2007-1234567

단체 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53-2007-1234567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54-2007-1234567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70-2007-1234567

지정업무 추가등록출원 : 72-2007-1234567

단체 표장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73-2007-1234567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74-2007-1234567

[참조2] 권리별[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 허: 10-1234567-00-00

실용신안: 20-1234567-00-00

디자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상 표: 40-1234567-00-00

업무표장: 42-1234567-00-00

단체 표장: 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44-1234567-00-00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디자인의 일련번호]란에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따른 등록결정을 받아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다. [총 청구항(디자인, 상품류)수]란에는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당시의 총 청구항 수, 디자인 수, 상품류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지정상품·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때에는 당해 등록료 납부 당시의 추가등록대상 상품류 수를 적습니다. 다만, 특허(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난을 적지 않습니다.

라. [포기대상]란은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때에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지정업무)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이 경우, 다음 예와 같이 [포기대상]란의 다음 줄에 [대상청구항](일부 디자인의 포기인 경우는 [디자인 일련번호] 및 [디자인대상 물품], 일부 지정상품(업무)의 포기인 경우는 [상품류] 및 [지정상품(업무)])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 상표권 설정등록료를 분할 납부할 때에는 1회차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포기대상]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1]

[포기대상]

[대상청구항]3, 4, 5

[예 2]

[포기대상]

[상품류]제20류

[지정상품]침대, 의자, 탁자, 식탁, 책꽂이, 옷걸이, 진열장, 쇼파

[상품류]제21류

[지정상품]가구덮는 솔, 가구용 먼지털이, 깃총채, 청소용 걸레

마. [납부연차(납부회차)]란

(1) [납부연차]란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한 설정 또는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연차(납부회차)]란을 [납부연차]란으로 하고 특허(등록)료 납부연차를 다음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납부하는 특허(등록)료가 제3년분부터 5년인 경우

[납부연차] 3-5

(2) [납부회차]란

상표권의 설정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로서 「상표법」 제72조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연차(납부회차)]란을 [납부회차]란으로 하고 납부 회차를 다음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또는 지정상품·업무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1] 상표권 설정등록 시 분할납부하면서 1회차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회차]1회차

[예 2] 상표권 설정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시 분할납부하여 2회차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회차]2회차

※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시 분할납부하면서 1회차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서)을 통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상표권 설정등록료(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2회차 납부 시에는 1회차 납부 시의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바.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참조하여

[감면(면제)사유]란에 해당하는 감면(면제)사유를 적고 감면(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다만, 특허(등록)료의 감면(면제)은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의 최초 3년분에 한하며, 상표등록료의 경우에는 감면(면제)이 되지 않습니다)

사.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2건 이상을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권리 회복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병합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7. [특허(등록)료]란

가. [특허(등록)료]란

(1) 설정 특허(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포기 후에 납부해야 할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특허(등록)료의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의 합산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2) 연차 특허(등록)료 및 분할납부한 상표권 설정등록료(존속기간갱신등록료)의 2회차를 납부하는 경우 연차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특허(등록)료의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의 합산 금액을 적습니다.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인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적고, 여러 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 산정하여 적습니다. 상표권 설정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 시 분할납부하면서 2회차를 납부하는 경우(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연장된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원래의 상표권설정등록료(존속기간갱신등록료) 2회차분을 적고, 존속기간갱신신청기간을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및 신청기간경과에 따른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의 2회차분을 적습니다. 여러 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을 산정하여 적습니다.

(3)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또는 지정상품·업무추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하는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또는 지정상품·업무추가 등록료를 적습니다.

(4) 특허(등록)료 보전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시에 납부해야 할 특허(등록)료에서 일부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등록)료 및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료를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특허(등록)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자는 감면 또는 면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등록세]란에는 상표등록료,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납부의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등록세액(교육세 포함)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에는 [특허(등록)료]란 및 [등록세]란에 적은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라. 특허(등록)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다음날까지 납부합니다.

8. [수수료자동납부번호]란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취하)서에 적은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9.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란

특허(등록)료를 보전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특허·등록료 납부서의 접수번호(예: 2-1-06-1234567-22)를 적습니다.

10. [회복신청]란의 표시

가. 출원인 또는 특허(등록)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이내에 특허(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기(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또는 특허권(실용신안등록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특허(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해 회복 신청하려는 경우 또는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을 회복 신청하려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나. [회복신청 원인]란은 회복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원인에 표시(예: ☒)합니다.

11. [특허(등록)증 수령방법]란

납부구분이 '설정' 특허·등록료인 경우에만 적으며, 희망하는 수령방법을 표시(예: ☒)합니다.

12.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란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수수료 또는 등록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금액을 이 서식에 따라 발생하는 특허(등록)료 및 등록세로 이체하려는 경우에 다음 예와 같이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서식의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접수번호를 적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수만큼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 정정신청]

[반환금이 발생한 서식의 접수번호]2-1-2006-0518678-52

13. [첨부서류]란

가.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소기업 감면서류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호번호: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소기업 감면서류 1통 [이하에 명기된 제출서류 원용]

[서류명] 특허(등록)료 납부서

[특허(등록)번호] 10-1234567-00-00

다. 감면 및 면제 대상자의 증명서류 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예와 같이 제출 합니다.

[감면 및 면제사유별 증명서류 예]

- (1) 감면사유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2)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 중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임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3) 감면사유가 공공연구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出捐)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받은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방위사업청이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4) 면제사유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5) 면제사유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6) 면제사유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이미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7) 면제사유가 학생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라. 회복신청을 하는 경우의 증명서류 제출

특허(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해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을 회복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특허(등록)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해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마. 특허(등록)료 납부의 기준일이 되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이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 발송일”과 다른 경우에는 “특허(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을 증명하는 서류(배달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납부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위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위신청인도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나. 등록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등록료, 등록세 및 인지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http://www.giro.or.kr>) 지로 납부서비스 또는 신용카드납부를 이용합니다.

다.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등록료, 등록세 및 인지세를 납부합니다.

첨부서류반환 요청서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대위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위원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반환받으려는 대상]

[접수번호]

[반환받으려는 서류명]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등록권리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위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9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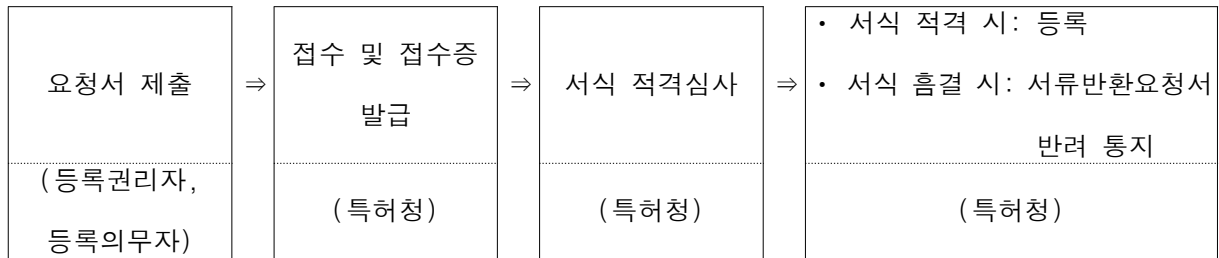
([서류명])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등록관련 신청서 또는 납부서에 대한 반려 통지를 받거나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첨부서류를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등록권리자]란

※ 해당란은 반환받으려는 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원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를 적지 않아도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신청서에 적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습니다.

나.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2. [등록의무자]란

※ 해당란은 반환받으려는 원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원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를 적지 않아도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신청서에 적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습니다.

나. [전화번호]란과 [전자우편 주소]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신청서에 흠결이 발생한 경우 적으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으로 보정사실 및 보정방법 등을 안내하게 됩니다.

다.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의무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3. [대위신청인]란

「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 또는 판결에 의한 신청 등의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위원인]란

가. 다음 예와 같이 대위신청인(채권자)의 대위권 발생원인인 피보전채권과 그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적습니다.

[예1] 대위원인이 매매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매매에 의한 특허권이전등록청구권

[예2] 대위원인이 대여금채권인 경우

[대위원인] 0000년 00월 00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나. 대위에 의한 신청은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가압류결정서, 압류조서 등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증서, 매매계약서 등 사서증서도 포함됩니다.

5.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 1 또는 예 2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1]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권리자 ○○○의 대리인

[예 2]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등록의무자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6. [등록대상의 표시]란

[특허(등록)번호(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서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특허(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번호]란에 출원번호를 적으며,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번호란	해당번호	기재의 예
[특허번호(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40-2005-1234567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0123456

[참조] 출원별[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 허: 10-1234567-00-00

실용신안: 20-1234567-00-00

디자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 표: 40-1234567-00-00

업무표장: 42-1234567-00-00

단체 표장: 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44-1234567-00-00

-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 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7.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반려안내서의 발송번호(예: 2-5-02-1234567-12)를 적습니다. 등록신청이 반려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이 칸은 적지 않습니다.

8. [반환받으려는 대상]란

[접수번호] 및 [반환받으려는 서류명]란에는 반환받으려는 서류의 접수번호 및 서류명을 다음 예와 같이 각각 적습니다.

[예] [반환받으려는 대상]

[접수번호] 2-1-02-1234567-12

[반환받으려는 서류명]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신청서

9. [첨부서류]란

가.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작성 시 유의사항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2인 이상의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한 서류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등록권리자)가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 명 서

[제출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등록대상의 표시]

[특허(등록)번호(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

([권리의 표시])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

[소명내용]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서류의 활용 또는 기재요
령 제6호 참조)

([서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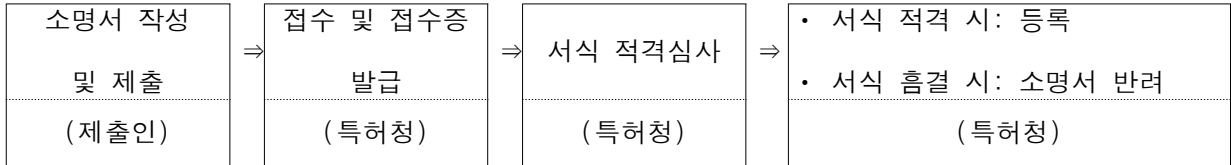
([특허(등록)번호(접수번호)])

(뒤쪽)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등록관련 신청서 또는 납부서를 반려한다는 통지나 보정안내서를 받은 경우에 이러한 처분에 대한 이견이나 부당함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제출인]란

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원신청서에 특허고객번호를 적지 않아도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신청서에 적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습니다.

나.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외의 임의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란 기재사항의 다음 줄에 [법정대리인 등], [성명],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란을 각각 만들어 적으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 서식에 첨부합니다.

[예] [등록권리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홍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 00000000

[법정대리인 등]

[성명] 고길동

[특허고객번호] 0-0000-000000-0
[주소]00시 00구 00로 000
([전화번호]) 000-0000-0000
([전자우편 주소])00000000

2. [대리인]란

가. 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 다음 줄에 [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고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대리인번호)
[지정된 변리사] 변리사 ○○○, 변리사 ○○○

나.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적으며,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위임자와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임자의 수대로 [포괄위임등록번호]란을 만들어 모두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대리인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포괄위임등록번호]

다.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대리인번호]란의 다음 줄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예] [대리인번호]

[특기사항] 제출인 ○○○의 대리인

라. 개별 위임관계를 갖는 대리인인 경우에는 [첨부서류]란에 “위임장” 이라 적고 위임장을 서식에 첨부하며, 위임장의 기재사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위임장)을 참조하여 작성합니다.

3.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특허(등록)번호(출원번호, 국제등록번호)]란에는 서식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특허(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번호]란에 출원번호를 적으며,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등록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란에 국제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번호란	해당번호	기재의 예
[특허번호(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출원번호]	권리구분(2자리)-연도(4자리)-일련번호(7자리)	40-2005-1234567
[국제등록번호]	일련번호(7자리) 또는 일련번호(7자리)영문자(1자리)	0123456

[참조] 출원별[특허(등록)번호]의 표기방법

특 허: 10-1234567-00-00

실용신안: 20-1234567-00-00

디자인: 30-1234567-00-00 (단수디자인), 30-1234567-00-01 (복수디자인)

국제디자인: DM/012345 (단수디자인), DM/012345-001(복수디자인)

상 표: 40-1234567-00-00

업무표장: 42-1234567-00-00

단체표장: 43-1234567-00-0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4-1234567-00-00

※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부분은 헤이그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 디자인의 경우 2014. 6. 30. 출원 건까지는 등록번호의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유사디자인을 표시합니다.

※ 상표의 경우 끝자리 4자리 중 앞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이전을, 뒤의 2자리는 상표권의 분할을 표시합니다.

나. ([권리의 표시])란에는 등록대상이 실시권, 사용권 또는 질권인 경우에만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권리의 표시]

[해당란] 전용실시권자란

[순위번호] 제00번

[등록사항]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4.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발송번호]란

보정안내서 또는 반려통지서의 발송번호(예: 2-5-02-1234567-12)를 적습니다.

5. [소명내용]란

소명내용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적습니다. 소명할 구체적 증거내용이 많은 경우 [소명내용]란에 “별지와 같음” 으로 적고, [첨부서류]란에 “소명내용” 및 그 부수를 적어 제출합니다.

6. [첨부서류]란

가.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소명내용 1통, 위임장 1통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호번호: 0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

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2-1-02-1234567-12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스캐닝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전자적 이미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작성 시 유의사항

제출인(대리인에 의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직권말소등록 요청서

【신청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말소대상 등록권자】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특허고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록대상의 표시】

【등록번호】

- (【권리소멸사유】) 등록권리자 사망 후 3년 경과
 청산종결(파산종결)등기일로부터 6개월 경과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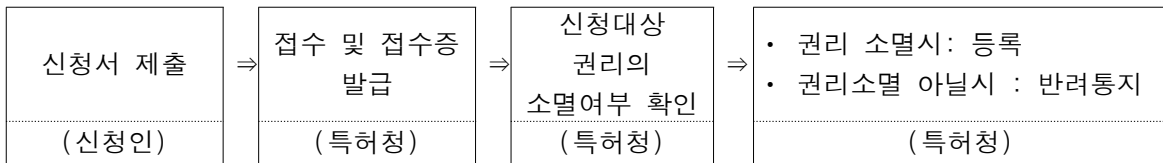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소멸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법인등기부, 기본증명서, 사유서등)
※ 국내건은 제출생략 가능

1. 서식의 용도

이 서식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상표권이 등록권리자의 사망 또는 법인해산시 권리소멸 규정에 의하여 (특허법제124조, 실용신안법제28조, 상표법제106조)하여 소멸한 경우, 등록원부상 말소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인】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에는 연락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특허고객번호가 없을 때에는 연락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만 요청한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말소대상 등록권자】란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란에는 말소대상 등록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말소대상 등록권자의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 【특허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등록권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법인등록번호 등 식별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3. 【등록대상의 표시】란

가. 【등록번호】란에는 말소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의 예와 같이 권리구분(2자리)-일련번호(7자리)-일련번호(2자리)-일련번호(2자리) 순서로 적습니다.

권리구분	번호란	기재의 예
특허	【특허번호】	10-1234567-00-00

실용신안	【등록번호】	20-1234567-00-00
상표	【등록번호】	40-1234567-00-00

나. 2건 이상의 사건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말소대상 등록권자와 소멸사유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대상의 표시】란을 반복하여 적습니다.

4. 【권리소멸사유】란

직권말소 요청대상인 특허권등 해당 권리의 소멸사유를 표시(예:☑) 합니다.

※ 특허법제124조, 실용신안법제28조, 상표법제106조 권리소멸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첨부서류】란

가. 【첨부서류】란의 기재방법

- (1)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할 서류명과 부수를 다음 예와 같이 적되, 서식과 함께 제출하지 않는 첨부서류는 적을 수 없습니다.

[예] 위임장 1통

- (2)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해야 하는 정보로서, 제출인은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습니다.

[예]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통 [상호: ○○○,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 (3)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4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 외의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허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고 다음 예와 같이 해당 서류의 명칭, 부수 및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장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예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예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통 [성명: ○○○, 생년월일: 000000, 보훈번호: 000-000000]

나.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해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 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권리이전등록신청서

【접수번호】 2-1-02-1234567-12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여야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컬러 이미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 이상 400dpi(300dpi 권장) 이하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여야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신청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① (생략)</p> <p>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특허법」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p> <p>3. ~ 6. (생략)</p> <p>③ ~ ⑧ (생략)</p> <p>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p> <p>① (생략)</p> <p>②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고,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며, 표시번호란에는 등록사항란에 기록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록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실용신안법」 제30조의3에</p>	<p>제3조(특허등록원부의 기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의 확정 결정</p> <p>3.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제4조(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록)</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 132조의13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3. ~ 6. (생략)

③ ~ ⑧ (생략)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① ~ ⑩ (생략)

⑪ 지정상품(서비스업, 업무) 추가등록료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생략)

<신설>

제53조(예고등록의 방법) 영 제6

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해당권리자란 중 등록사항란에 그 소가 제기된 취지·연월일 및 제소인(提訴)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확정결정

3. ~ 6.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등록 관련 신청 서식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업무) -----

-----.

⑫ (현행과 같음)

⑬ 특허권 등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등록원부상 권리말소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직권말소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삭제>